

8월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- 편집자 주 -

■ 2010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,363,091원, 2.75%인상

-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(위원장:전재희장관)를 개최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.
 -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4천원, 2인가구 858천원, 4인가구 1,363천원으로, 금년 대비 2.75% 인상된 금액이다.
-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(이하 계측조사)를 실시하고 있으며, '07년에 계측조사를 실시하였다.
 - * 최저생계비 계측조사: '99, '04(5년주기), '07년(3년주기: '04년 법개정)
 - 금년에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금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, 국민의 생활실태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.
 - 아울러,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결정과 함께, 빈곤층 보호 강화를 위해, 2010년 기초생활 예산상 수급자 수를 2009년 예산상 수급자 수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였다.
- 또한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22천원, 2인가구718천원, 4인가구 1,141천원으로 결정하였다.
 -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,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·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.
 -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을 차

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·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.

-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,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수준이 유지되고, 차상 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.

■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정비합니다!

- 국민연금공단(이사장 박해춘)은 연금가입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내용이 행정안 전부 주민전산자료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9만 여건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집중적으로 정 비하고 있다.
-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준으로 관리되며,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 한 내용을 공단에서 전산입력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다시 통지하는 한편, 1년에 한 번씩 개 인별로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내역을 안내하는 등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.
- 주민전산자료가 전산화 되고 행정전산망을 통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불일치 사례 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바로잡는 게 쉬워졌으나, 제도시행 초기인 1988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.
- 이 번 정비로 잘못 관리되던 가입이력이 제자리를 찾아 가입기간이 합산됨으로써 자칫 잃어버 릴 뻔 했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1988년 제도도입 이후, 지금까지 총 7,800만 건의 가입이력을 관리하면서, 약 180만 건의 성명 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등을 통해 정정처리 해왔다.
- 특히, 이 번 집중 정비가 시작된 지난 6월 12일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상당수의 상이자를 확인·정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.
- 연말까지 집중 정비를 추진하되, 그 때까지 확인되지 않는 이력은 별도 관리 하면서 급여 청 구시 최종 확인토록 하는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

■ 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수급 가능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채희)는 지난 2월 6일 제정·공포된 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연계법’)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혀다.

-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 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국민연금 -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닌 일반국민(18-60세)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
 * 직역연금 -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, 공무원연 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·군인연금·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이에 해당

-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10년 이상,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 을 받을 수 있었고,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.
- 이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(국민연금↔직역연금)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.
- 이번 연계법의 시행으로 앞서 예시된 사람의 경우 이미 가입한 공무원연금 15년에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하여 20년을 채우면, 향후 공무원연금에서 1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, 국 민연금에서 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- 연계제도의 대표적 수혜자는 최근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, 국공립과 사립기관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교원,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직장을 옮기는 간호 사·의사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이동하는 사람들이다.
-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3천명, 2030년 8만8천명, 2050년에는 58만3천명의 추가적인 연금 수급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■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,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

- 국민연금공단(이사장 박해춘)은 20일, 올해 상반기 중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를 분 석한 결과 연금보험료 미납 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,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당부했다.
- 공단은 국민연금의 수급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,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5가지를 소개했다.
- 첫째,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나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, 연금보 험료 납부 기간이 총 가입기간*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,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. 이는 가입자간 형평성과 보험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취지이다.
- *여기서의 ‘총 가입기간’은 ‘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(미납)’을 포함

- 둘째, 장애연금은 60세 이전에 청구해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.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질병, 부상 등으로 완치*된 이후에도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.
- 셋째,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60세 도달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. 국외이주(국적 상실)*,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.
- 넷째, 임의계속가입* 신청이나 반환일시금 반납금**, 추납보험료 납부***는 60세 이전에 하여야 유리하다. 60세가 지나서 신청하면 늦게 한 만큼 연금을 늦게 받게 되고, 더구나 60세 도달 당시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도 낼 수 없다.
 - * 임의계속가입: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계속 가입할 수 있음
 - ** 반환일시금 반납금제도: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음
 - *** 추납보험료: 소득이 없어 납부에외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
- 다섯째, 농어업에 종사하게 되어 공단에 농어업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 국고보조*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지역가입자가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면 그 인정된 기간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(최고 월 32,850원)를 국고로 보조받게 되는데, 신고한 연도부터 지원받으므로 늦게 신고하면 지난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.
 - * 기준소득월액 73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50% 정률 지원, 73만원 이상은 정액 32,850원을 국고에서 보조
-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“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”며, 공단에서 발송하는 각종 안내문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,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1355 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■ ■ ■ 근로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

□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, 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‘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’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

- 다고 밝혔다.
-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타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,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‘근로무능력자만 이루어진 가구’로 한정함으로써,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하여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.
- 이에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어도 빈곤한 경우 중 ‘한부모가족,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·노인·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’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.
-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,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.
 -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, 신청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지만,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*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.
 - * 선정기준
 - 소득: 최저생계비 이하(1인 49만원, 4인 132만원)
 - 총재산: 대도시 1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
 - 금융재산: 300~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
 - 다만, 일을 할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,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,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.

■ ■ ■ 올해 11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: 전재희)는 금년 11월부터 1년간 완화의료(호스피스)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 기준 제도에 발맞추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하여,
-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은 금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, 참가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(참가자격)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 기관으로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('09.8월 현재 34개소)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공고문의 소정 양식에 따라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참가신청서는 9월 1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.

- (선발기준) 지역, 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병상수 등을 고려하여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,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25일에 발표된다.
- (기대효과)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,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,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모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■ 의료인-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 추진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「의료법」 개정을 위하여 7월 2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 8월 1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,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,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.
-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“이번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,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특히, 의료인-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, 우리나라의 수준높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- *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기관, 의료기기업체, 통신사업자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1만 5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(「U-health care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」, 보건산업진흥원, 2008)
- 이번에 입법예고된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규제심사·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

■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

- 출산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2개가 하나로 통합된다.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'09. 8. 1.부터 임신부에게 임신·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운맘카드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·신생아 바

- 우치카드를 통합하여 새로운 『고운맘카드(통합카드)』를 발급한다고 밝혔다.
- ◆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사업: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부에게 2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는 산전진찰과 분만비용지원서비스(건강보험재정)
- ◆ 산모·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(4인 가구 월 1,956천원)인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서비스(일반재정, 고운맘카드 지원대상의 10%가 해당)
- 그 동안 임신부는 고운맘카드를 사용하여 산전진찰이나 출산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.
- 이에 앞으로는 임신부가 출산 후에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임신 시에 발급받은 고운맘카드(통합카드)를 사용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■ 휴폐업 실적 가구 적극적 긴급지원 나선다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금년에 한시적으로* 시행중인 휴·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※시행기간: 휴·폐업 영세자영업자 '09.1.13~12.31,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6.5~12.31
- 휴·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, 일용직근로자의 실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.
- 그동안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여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점포 등의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소진하여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비로소 지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.
-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지는 휴폐업으로 인하여 생계곤란 및 학업 중단, 가정해체 등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재창업·취업 등 신속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.
- 그런데, 금년 상반기 휴폐업자 긴급지원대책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의견수렴 결과, 청산 후 금융기관에 예치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함으로써 대부분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, 결국 점포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나 월세 등으로 지출하여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
- 이번 조치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의 상당수가 긴급지원 대상가구로 새롭게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.
 - 참고로,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「가구내 주소득자가 국세청사업등록자인 상태에서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,400만원 이하이고, '08.10.1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하여 1개월이 경과한 자」이다.
 - 아울러, 실직, 휴·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당사례가 발견될 경우 친족, 이웃, 학교 등에서 거주지 시·군·구청이나 보건복지 129 콜센터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.